

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일반현황	업체명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(대표자)	
	소재지 주소		전화번호	
			팩스번호	
	업종	기업규모 []대기업 []중소기업 []벤처기업 []그 밖의 업종	설립일	
	담당자 성명	부서/직책	전자우편주소	
전화번호				

기술현황	기술명칭		
	기술구분		
	[]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		
	[] 국공립연구기관, 대학,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		
[] 정부, 국공립연구기관, 대학,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(원천기술 보유기관:)			

신청내용	신청분야		
	[] 시험제품 제작 [] 설비투자 []교육 및 홍보 [] 그 밖의 분야		
	총투자자금		
	용자: 백만원, 보조: 백만원, 자체 : 백만원, 합계: 백만원		
사업기간			

「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1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1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계획서 1부				수수료 없음
	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.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 개발내역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				
	가.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				
	나.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, 대학,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				
	다. 정부, 국공립연구기관, 대학,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				
3.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					
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심사 및 지원 여부 결정	→	결재	→	결과 회신
신청인		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		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		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		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